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12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9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선희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정비
-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휘장변경 및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